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804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가소161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20.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11,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입니다. 저금리 대출 가능하지만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 가능하니 휴대폰으로 보내준 앱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D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D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현금 또는 카드로 출금되었고, 2020. 5. 9. 현재 위 D 계좌에 5,711,61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2020. 7. 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20. 5. 9. 현재 피고 명의의 D 계좌에 5,711,617원이 남아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그가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위 계좌에 남아있는 5,711,617원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은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위 계좌에 남아있는 5,711,617원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11,6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판사 한동석

판사 홍유정